

서울교육대학교와 드림터치포올의 상호 협력을 위한 교류 협약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자 양성대학 서울교육대학교와 교육소의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봉사를 제공하는 드림터치포올은 대한민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동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교육대학교와 드림터치포올(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의 대한민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공동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호 협력함은 물론 이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1. 교육소의 대상별(탈북, 저소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수법 연구개발
2. 전국 교육소의 청소년 지도교사 및 대학생 봉사자 대상 트레이닝 워크숍 개최
3. 탈북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국어, 영어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4. 탈북청소년을 위한 국어, 영어 지도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5. 드림터치포올 교육봉사 활동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봉사실적으로 인정
6. 서울교육대학교 학생 대상 드림터치포올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제4조(비밀엄수) 본 협약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 기관의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협정기간) 본 양해각서의 협정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협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제6조(협정의 변경 및 해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이 해지된다.

1. 양 기관이 협약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
2.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3. 단,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법적효력) 본 양해각서는 제4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제8조(효력발생) 양 기관은 양해각서에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양해각서의 효력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9조(기타) 본 양해각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7. 5. 11.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김경성

김 경 성

드림터치포올

드림터치포올
대표 최유강

최 유 강